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주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69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 박주민·채현일·박해철

정진욱 • 박희승 • 강준현

이광희 • 박지원 • 이용우

이재관 · 문금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.

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(안 제32조 등).

법률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 제목 중 "비교공시 등"을 "비교공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제3조에"를 "다음 각 호에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예금성 상품 중 예금
- 2. 대출성 상품 중 대출
- 3.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권
- 4. 보장성 상품 중 보험
- 5.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·처분할 수 있는 금 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
-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이자율(제1항제2호의 경우 기준금리 및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 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포 함한다)
- 2. 보험료

- 3. 수수료
- 4.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금융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.
- ④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5장제1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2조의2(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등)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 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.

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2조(금융상품 비교공시) ① --제32조(금융상품 비교공시 등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 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 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----다음 각 호 따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 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 여 공시할 수 있다. <신 설> 1. 예금성 상품 중 예금 2. 대출성 상품 중 대출 <신 설> 3. 투자성 상품 중 집합투자증 <신 설> 권 <신 설> 4. 보장성 상품 중 보험 <신 설> 5.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취득ㆍ처분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주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1. 이자율(제1항제2호의 경우 있다. 기준금리 및 금융상품판매업 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

-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 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이라 한 다)을 정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, 내용 및 절차,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,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된 가산금리를 포함한다)

- 2. 보험료
- 3. 수수료
- 4.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 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-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 치단체, 금융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하 여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

<신 설>

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.

제32조의2(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등)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다.
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 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(이하 "금융소비자보호기준"이라 한 다)을 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 의 절차, 제2항에 따른 금융소 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